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성주참외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

○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업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,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
○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용료를 2년간(2009. 4. 1~2011. 3.31) 면제하여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안정화에 활력을 주고자 함.

4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우리의 농업·농촌은 인구감소와 노령화, FTA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,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체일로에 있습니다.

□ 그 여파로 우리군의 농업·농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우리군의 주 소득원

인 참외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

□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사업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